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3-10호

발행일: 2023. 9. 12. (화)

제409회 국회(임시회, 2023. 8. 16. ~ 2023. 8. 25.)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은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가.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나.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는 원문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1. 개관

제409회 국회(임시회)는 2023년 8월 16일부터 2023년 8월 25일까지 10일간 진행되었으며, 8월 24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모두 39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09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선불업자 관리 강화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고, 소액후불결제 허용으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 종합적인 도시하천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법률안, (3) 오토바이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를 정부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하는 「중소기업인력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는 「고독사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6) 해양폐기물 수거의 업무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고, 폐기물 해양 배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09회 국회의 2023년 8월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39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정무위원회(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4 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윤한홍 의원 등 11인
3	교육위원회(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 의원 등 12인
4	행정안전위원회(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 의원 등 12인
6	문화체육관광위원회(5)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9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 의원 등 12인
1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이병훈 의원 등 13인
1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1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1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1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15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6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의원 등 10인
17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의원 등 18인
18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1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장
2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장
2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장
2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 의원 등 11인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 의원 등 11인
2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 의원 등 10인
25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 의원 등 10인
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의원 등 11인
27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28	보건복지위원회(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 의원 등 10인
29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3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3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33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 의원 등 12인
34	환경노동위원회(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의원 등 11인
35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 의원 등 10인
36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노웅래 의원 등 13인
37	국토교통위원회(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3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의원 등 11인
39	정치개혁 특별위원회(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치개혁특별 위원장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 소비자 보호,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개요

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

라 결제, 송금, 대출, 자산관리 등 금융 전반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영국, EU 등 글로벌 선진 국가에서는 핀테크를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에 기여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오프라인 또는 PC로 접하였던 ‘금융서비스’를 ‘모바일 인터넷 환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정부는 핀테크,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금융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함과 동시에 금융안정,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하여 디지털 금융 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 및 경쟁 질서를 정립하고, 오픈뱅킹 서비스 시행,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개발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과 금융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였습니다. 더욱이 디지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 보안 규제를 선진화하고, 신기술 기반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소비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여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회는 근래 사업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어 온 선불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두터운 보호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도모하였습니다.

2023년 8월 24일 본회의에서는 지난 2021년 8월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고, 선불업자로 하여금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정무위원회	<p><u>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u></p> <p>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선불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청되고 있고,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된 전자금융업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선불업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선불충전금에 대해 신탁,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도록 하고, 등록 면제 요건을 강화하여 법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선불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행위규칙을 마련하는 한편, 간편결제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특례대상으로 도입된 소액후불결제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제도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p>	2023-08-24 (원안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위)

과제목표

금융행정의 자의·재량 여지 축소 및 금융권 자율성과 책임원칙 구현
디지털 환경 하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역량 확충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주요 내용

- (금융행정 혁신) 금융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검사·제재 시스템을 개편하고,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 (빅테크 규율정비) 국제 논의동향에 맞추어 불완전판매 방지, 고객정보 보호 강화 등 금융분야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체계를 합리적 재정비
-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 및 금융 보안 규제를 개선
- 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촉진
-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진입체계 마련
- 빅블러(Big-blur) 시대에 적합한 방향으로 금융회사 업무범위 규제 개선
 - 종합금융플랫폼 구축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요인 해소
 - AI 등 IT 외부자원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업무위탁 규제 합리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2022. 6. 16.)

① 디지털 혁신금융 및 민간 혁신성장 지원 확대

- **(규제혁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산업 규제 전반 개선*
 - * (예시) 금융사와 비금융사(IT 등)간 협업 및 경쟁이 가능하도록 업무장벽 완화
- **‘금융규제개혁 TF’(가칭, 신설)’**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빅테크 성장,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금융안정·혁신 과제 발굴·추진
 - * 금융위 등 금융감독유관기관, 금융업권, 학계·연구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
- **(디지털자산 제도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 조성
 - * (예시) 디지털자산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방안 마련
-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과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등 역할 재정립*
 - * (예시) 민간금융 영역의 정책금융 점진적 축소, 정책금융 성과평가발전적 재편 추진
- **(신뢰편의 제고)** 물적분할시 소액주주 권리보호 강화,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실효성 제고, 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공시(‘22/4)* 등 추진
 - * (현행) 예대금리차 개별공시(3개월 주기) → (개선) 비교공시(1개월 주기)

출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 6. 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2년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금융위원회, 2022. 8. 8.)

[세부과제1]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금융산업의 새판 깔기

□ 기본방향

- 우리 금융에서도 글로벌 금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

□ 추진과제

- ① 금융산업의 빅블러 현상 및 디지털 전환에 맞춰 금융회사 디지털 신사업 추진 등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보완
 - 플랫폼 금융서비스(예: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활성화를 위해 전업주의 완화
- ② 금융·비금융·공공간 데이터 개방·결합을 확대하고, 금융분야 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예: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등)
- ③ 체감도 향상을 위해 감독·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의 글로벌화 지원
 - 신사업 등 금융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제재에 대해서는 제재상대방 반론권 강화 등 검사·제재관행 선진화

- ◆ ^①업계간 이해 충돌(금융업권간, 금융사 vs 빅테크·핀테크 등) 세밀히 조정
- ◆ ^②규제완화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2023년 정부 업무보고(금융위원회, 2023. 1. 30.)

□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금융규제 개편을 통해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과 금융·비금융 융복합 신상품 개발 지원

- ① 금융회사의 비금융업종 자회사 출자 또는 부수업무 영위 허용 등 과감한 금융규제 완화 방안 마련
- ② 금융업 영위 빅테크에 대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율체계* 마련
 - * (1) 빅테크의 데이터·네트워크 특성을 고려한 규제 사각지대 해소
 - (2) 빅테크 그룹 내 금융·비금융간 위험전이 발생 가능성 방지 방안
 - (3) 빅테크-금융회사간 업무 위·수탁 및 제휴 관계에서의 리스크 관리
- ③ 금융보안규제의 국제 정합성 및 혁신 친화성 제고*
 - * (1) 금융회사 등이 리스크 기반의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 개선
 - (2) 금융보안 규제를 '목표·원칙 중심, 사후책임 중심'으로 전환
 - (3) 금융보안 전문기관을 통한 금융회사 등의 자율보안체계 검증 및 컨설팅 기능 강화

□ 핀테크 기업에 대한 컨설팅, 정책자금지원, 데이터세트 종합지원

- ① 핀테크 기업에 법률·회계·기술 등 전문가의 종합컨설팅을 제공
- ②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확대(5천억원 → 1조원)하고, 연간 2천억원 이상의 정책자금 공급 추진
- ③ D-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이 전문 데이터분석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공데이터 범위(비금융 포함)도 확대
* 핀테크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이 구체적인 사업 개시전 기술아이디어의 사업성, 실현 가능성 등을 미리 검증개발할 수 있도록 금융권 데이터 및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
- ④ 전문·지원인력이 부족한 중소 핀테크 회사도 샌드박스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지원단과 전담책임자 매칭 지원

□ 데모데이 등 핀테크 기업들의 투자설명 기회를 다각도로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출처: 2023 정부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의원안: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등록 대상 확대](#) 2022. 5.

[송재호 의원안: 선불전자지급수단 판매대행자 연대책임 및 선불충전금 예치 등](#) 2022. 5.

[박재호 의원안: 금융보안책임자 지정 및 이용자예탁금 예치 등](#) 2022. 11.

[이정문 의원안: 선불충전금 예치·신탁 등 보호제도 마련](#) 2022. 9.

[강민국 의원안: 선불충전금 예치·신탁 등 보호제도 마련](#) 2023. 2.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누리집

[선불업자 관리 강화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고, 소액후불결제 허용으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브리핑룸 보도자료

[금융위, 핀테크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금융위원회 누리집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핀테크 기업이 신규 플레이어로서 금융업의 실질적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누리집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 규제 시 고려사항 - 소비자 보호 및 부채 관리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2022. 10. 26.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 서비스는 저신용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 및 부채 관리에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시각도 있다. 최근 후불결제 관련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스웨덴, 호주, 미국,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표준화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과도한 신용공여 방지를 위하여

연체정보의 공유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후불결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될 경우, 대출성 상품으로 포섭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가 ‘결제’인지, ‘대출’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는 것도 선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입법·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1. 6. 4.

■ 금융보안은 금융시장의 신뢰와 직결되므로, 보안정책 수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나, 보안성 확보와 기술개발의 효율성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보안정책 중 특히 망분리 규제는 금융부문의 개발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음
- 현재 안전한 디지털금융 생태계 확립을 위한 명확한 보안원칙과 기준이 「전자금융거래법」 상 존재하지 않음. 또한 기존 망분리 규제 하에서는 데이터와 분석도구가 분리되어 데이터 활용에 비효율적이라는 점, 개발 속도의 저하로 인건비가 증가하고 인재 유출이 발생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망분리 규제 개선을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보안의 원칙 정립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안정책을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또한 업무 비효율에 따른 규제 개선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개발 망에 대하여 자격을 갖춘 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물리적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되 보안성·위험성 심사, 보고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금융당국의 보안 관련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어려울 수 있는 바, 외부 보안전문가로 구성된 심의기구로서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금융위원회 내에 설치하여 ① 금융보안 정책의 개선, ② 금융보안 관련 감독규정의 개정, ③ 물리적 망분리의 예외 인정 여부 등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금융 산업 구조 측면에서의 디지털 금융 혁신 동향과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0. 5. 30.

□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 기업 및 빅테크 기업이 금융 시장의 구조를 변화시켜 금융 혁신을 촉진하고 있음

○ 핀테크 기업과 빅테크 기업은 대출 등 기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 등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대안금융의 역할을 수행하여 금융 산업의 외연을 확대하고 있음

○ 또한 핀테크 기업과 빅테크 기업은 기존 금융 기관과 협력 또는 경쟁함으로써 금융 혁신의 촉매 역할을 함

○ 다만, 빅테크 기업의 경우 주력사업에서 획득한 데이터와 브랜드 인지도를 이용하여 기존 금융 인프라가 부족했던 국가 등에서 시장지배력을 획득하게 될 우려가 존재함

□ 국내 핀테크 기업도 금융 산업 내 혁신 촉진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규모와 경험 측면에서 기존 금융 기관과 경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국내 빅테크 기업은 지급결제·송금 분야를 중심으로 금융 시장에 진출 중이나, 기존 금융 인프라가 공고하여 당분간은 기존 금융기관 중심의 금융 생태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력한 진입규제 보다는 정책적으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할 것임

□ 다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보유량과 그 처리 능력 및 주력 사업 부문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 소수 빅테크 기업에 의한 시장집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

개요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국내외 여론이 뜨겁습니다.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은 아니지만 국내외 해양환경 측면에서의 시급한 현안으로 해양쓰레기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해양쓰레기 문제를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 영향의 대상과 범위가 매우 빠르게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도 해양폐기물 관리의 필요성을 높이 평가하여 그동안의 해양쓰레기 수거 중심에서 벗어나 발생부터 재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적 관리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령 정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해양쓰레기 예방·수거·처리·재활용-홍보·캠페인에 이르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회는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거·처리 및 재활용 방법을 도입하는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2월 제정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3년 8월 24일 본회의에서는 해안폐기물 등의 수거 명령에 대한 이행완료 보고, 확인, 통보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폐기물 해양 배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안폐기물 등의 수거 명령에 대한 이행완료 보고, 확인, 통보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시장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도록 하고,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만이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023-08-24 (원안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해수부·해경청)

과제목표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건한 국가해양력 구축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연안 공간 조성

주요 내용

(해양영토 수호·확장)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여 해양영토 관리역량 강화

- 어업관리단을 어업관리본부로 개편, 대형 어업지도선 및 해경함정 증강 배치, 해상경비정보융합플랫폼(MDA) 구축을 통한 해양주권 위협 조기 대응

(해상교통관제 강화) 선박교통관제센터를 권역별 광역 센터 통합('25년), 관제 레이더 확충(86→107개) 등 해상관제 고도화로 선박안전 확보

- 민간구조대 지원 강화, 전문교육 확대로 해양 인명구조 민관협력 공고화

(섬 주민 이동권 증진) 연안여객선 공영제 실시('25년),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를 추진하고, 섬 주민 여객선 요금 경감

(공간관리·연안안전 강화) 지자체 간 해상경계 획정, 해상풍력 등 해양 개발 행위에 대한 상생·공존 체계 마련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 도입

- 국내 연안에 태풍·해일 등 재해 감시망 구축, 주요 연안에 친환경 완충구역 조성, 재해안전항만 구축 등 연안 안전망 확보

(청정 해양환경 조성) 갯벌·바다숲 등 탄소흡수원(블루카본) 확대, 권역별 국가해양정원 조성, 친환경 부표 보급 등 해양쓰레기 예방·수거 강화

2022년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해양수산부, 2022. 8. 11.)

1 해양생태계 해양쓰레기 저감 + 해양보호구역 확대 → 건강성 회복

- 해양쓰레기 ①발생 - ②수거·처리 - ③재활용 전주기 관리 강화로 '27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50% 저감
 - * ①어구·부표 보증금제, 스티로폼 소재 대체 인증부표 100% 보급('24)
 - ②도서지역 정화운반선 건조('23, 7척), One-Stop 처리선박 개발('26)
 - ③재활용 전문업체 육성
- 해양보호구역을 영해 면적의 17%(現 9.2%)까지 확대, 국가해양정원(가로림만) 등 생태관광과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
 - 수족관 남방큰돌고래('22.3분기) 및 흰고래(벨루가, '23.下) 해양방류 추진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부 제출안: 국가 등의 책무,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2021. 9.

배준영 의원안: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2021. 12.

위성곤 의원안: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근거 마련 등 2023. 4.

해양쓰레기 유입량보다 수거량 늘린다...2027년까지 4만t 감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해양폐기물 저감 대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문재인정부 국정백서\(안전_제12권 국민안전 안심사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SOS\(Save Our Seas\)법」 개정과 국제사회의 동향](#)

국회입법조사처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2020. 3. 11.

-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SOS 2.0법안」(상원 의안번호 S.1982)이 2020년 1월, 美 상원을 통과하였음
- UN, G7/G20 정상회의, EU 등 최근 국제사회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점점 강화되는 플라스틱 규제 정책과 재활용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IMDC(해양쓰레기 대책 조정위원회)와 같이 관련 부처 등이 참여하는 다부처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을 예방·수거 중심에서 감축·재활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해양 유입 하천쓰레기 관리체계 개선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보고서 기본 2020-08 2020. 12. 31.

본 연구는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 현황 및 특성, 관리 여건을 종합하여 해양 유입 하천쓰레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생분해성 어구 사용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보고서 수시연구 2020-02 2020. 12. 31.

본 연구의 목적은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생분해성 어구 사용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생분해성 어구에 대한 어업인 인식도 조사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한 후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음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팀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